

금년 10. 1.부터 선택진료제도가 바뀝니다 !

◆ 선택진료제도(일명 ‘특진제’)가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2011. 10. 01.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,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(보호자)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.

□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선택진료의사 배치를 확대합니다.

지금까지는....

-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

앞으로는...!!

-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의무화

* 필수진료과목은 외래진료가 잦은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·고시

□ 선택진료에 관한 환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됩니다.

지금까지는....

- 검사·마취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신청을 주치의에게 포괄 위임 가능
- 진료비 수납시 추가비용 발생분에 대하여 불필요한 민원 야기

앞으로는...!!

-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로 환자(보호자)가 신청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서명
- 환자(보호자)가 알기 쉽도록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서식 전면에 명시하고, 선택진료비 부담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안내
- * 건강보험심사평가원(☎ 1644-2000)

-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.

지금까지는....

- 면허취득 후 15년 또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경과
-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

앞으로는...!!

- 현행과 동일
 -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
- * 2012. 10. 1.부터 시행 예정**

- 선택진료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가 보다 강화됩니다.

지금까지는....

- 선택진료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
 - 의사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
 - 선택진료의사의 경력 . 세부전문분야 등에 관한 정보
 - 선택진료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

앞으로는...!!

- **현행과 동일**
-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의무 부과
- 선택진료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 연장(3년 → 5년)